

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경 만 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재난 상황으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에 대해 그 손실이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실정입니다.
- 이에 코로나-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여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으나 노선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.(제8조 제3, 4항

신설)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